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

판 결

사 건 (인천)2019나1061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조형일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가합1113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20.

판 결 선 고 2021.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9행의 "명의신탁하였다."를 "명의신탁하였다(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2019. 2.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부인하며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피고는 2015년 이후부터 원고에게 매월 30만 원 상당의 일정액을 꾸준히 지급하여 왔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은 부동산 중 약 30평 상당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였는바,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4면 15행 내지 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아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

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그 대상청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멸실 당시 가액 범위 내에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취지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기산점인 1996. 7. 1.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5. 14. 제기되었으므로 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가액반환의 무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6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의 채무승인 주장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9,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가 사용하던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소멸시효 완성 이후인 2007. 12. 3.

8,000,000원, 2008. 2. 14. 8,000,000원, 2011. 5. 25. 1,000,000원, 2011. 6. 19. 900,000원, 2011. 8. 1. 1,000,000원, 2011. 9. 19. 120,000원, 2011. 9. 20. 250,000원, 2011. 10. 19. 49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재개발로 인하여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지원

판사 서여정

판사 임 술